[인천 영종지구 A-1블록] 유승한내들 스카이스테이 임차인모집공고(민간임대주택)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준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입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주)유승종합건설이며,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수행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7.06.08)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가능, 법인 청약불가)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청약신청은 견본주택에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청약자와 계약자 및 입주자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하여 계약체결(정당 계약 기간 내)전 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예외로 합니다.(단, 특별공급 당첨자 중 재능기부자는 제외) ■ 청약접수 완료 후 청약신청의 변경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청약접수 완료 전 청약접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수항목 등을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므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공항근무자, 재능기부자, 신혼부부, 지역거주자) 및 일반청약의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반드시 임차인모집공고문의 신청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신청 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차권 양도 및 전대금지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확인 및 건물점검, 수리 등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중복청약 당첨 시 처리기준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이 주택은 1인 1건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 한내들 스카이스테이(준공공임대주택)는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단, 이 공급공고시 「주택법」 제20조,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임차공급내역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01-1(영종지구 A1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20층, 6개동, 총 4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공항근무자 특별공급 126세대, 재능기부자 특별공급 4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3세대, 지역거주자 특별공급 43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전용면적	주택형(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주택면적 - 공급면적 - 전용	공급면적 - 주거공용	공급면적 - 계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 계	특별공급 - 공항근무자	특별공급 - 재능기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영유아)	특별공급 - 지역거주자	특별공급 - 소계	일반공급	1층 우선 배정세대	입주 예정시기
80.1472	80A형	80.1472	24.0961	104.2433	4.2216	44.3930	152.8579	55.2943	184	55	18	19	19	111	73	8	2019.09
80.3131	80B형	80.3131	25.4592	105.7723	4.2303	44.4849	154.4875	55.4088	20	6	2	2	2	12	8	1	
84.8366	84형	84.8366	25.1191	109.9557	4.4686	46.9904	161.4147	58.5296	216	65	20	22	22	129	87	6	

▣ **임대보증금 납입조건 및 월임대료(표준형)**

(단위 : 원)

전용면적	타입	공급 세대수	층 구분	임대보증금 - 총액	계약금 1차 - 계약 시	계약금 2차 - 3개월 이내	잔금 - 입주지정일	월임대료
80.1472㎡	A	184	4층 이하	100,000,000	5,000,000	5,000,000	90,000,000	390,000
			5층 이상	100,000,000	5,000,000	5,000,000	90,000,000	420,000
80.3131㎡	B	20	4층 이하	100,000,000	5,000,000	5,000,000	90,000,000	390,000
			5층 이상	100,000,000	5,000,000	5,000,000	90,000,000	420,000
84.8366㎡		216	4층 이하	110,000,000	5,000,000	6,000,000	99,000,000	390,000
			5층 이상	110,000,000	5,000,000	6,000,000	99,000,000	420,000

▣ **임대보증금 납입조건 및 월임대료(전환형)**

(단위 : 원)

전용면적	타입	공급 세대수	층 구분	임대보증금 - 총액	계약금 1차 - 계약 시	계약금 2차 - 3개월 이내	잔금 - 입주지정일	월임대료
80.1472㎡	A	184	4층 이하	145,000,000	5,000,000	5,000,000	135,000,000	220,000
			5층 이상	145,000,000	5,000,000	5,000,000	135,000,000	250,000
80.3131㎡	B	20	4층 이하	145,000,000	5,000,000	5,000,000	135,000,000	220,000
			5층 이상	145,000,000	5,000,000	5,000,000	135,000,000	250,000
84.8366㎡		216	4층 이하	155,000,000	5,000,000	6,000,000	144,000,000	220,000
			5층 이상	155,000,000	5,000,000	6,000,000	144,000,000	250,000

※ 본 주택은 청약 시 타입 기준(80A / 80B, 84)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의 선택은 계약시 및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추후 변경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펌프실/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임차인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을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유의사항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펌프실, 경로당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공급가를 산정함) • 임대 보증금은 계약금(1차, 2차),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 일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임대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의 시행권 및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임대계약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를 받고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Ⅱ.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공통)**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7.06.08)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청약신청가능 /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 자산보유액 및 소득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추첨 및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특별공급 대상자 (252명)	2017. 06. 09(금) 10:00 ~16:00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불가)	당첨자 추첨 : 2017. 06. 10(토) 14:00 당첨자 발표 : 2017. 06. 10(토) 16:00 동호수 추첨 : 2017. 06. 11(일) 10:00

■ 특별공급 안내

모집분야		자격요건	비 고
공항근무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항공사 소속 근무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추첨에 의한 당첨자 선정
재능기부자	미술	•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경력 1년 이상	[운영관련 교육] 최초 2년간 연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최소 연간 10시간, 2년간 20시간 이상
	음악	•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경력 1년 이상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 공인외국어시험(토익 스피킹 6등급, HSK 5급, JLPT N2 이상) 또는 어학관련 강사경력 1년 이상	
	체육(골프, 헬스)	•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신혼부부		• 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일 5년 미만 세대 (혼인일 : 2012. 06. 09이후) 또는 임차인모집공고일 기준 만0~7세 영유아 자녀로 구성된 세대 (출생일 : 2010. 06. 08~2017. 06. 08)	추첨에 의한 당첨자 선정
지역거주자		• 모집공고 전 전입신고를 완료한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만석동 지역 거주자	추첨에 의한 당첨자 선정

■ 접수 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 공 통	항목별	
본인 접수 시	• 특별공급 신청서 • 본인 신분증	공항근무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항공사 근무자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항공사 근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시 – 공항근무자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재능기부자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해당 자에 한함) • 어학시험 성적표(해당 자에 한함) • 경력입증 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타 1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단, 임차인모집공고일 前 10년 이내(2007. 05. 00 이후)의 경력만 인정 • 견본주택 내 비치된 운영유지 특약서(최소 2년간 유지) 작성
		신혼부부	• 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일 5년 미만 세대 * 2017. 06. 08)
		신혼부부(영유아자녀)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포함)
		지역거주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포함) 또는 전입신고서
대리인 접수 시(배우자 포함)	• 본인 접수 시 구비서류 외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도장 •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은 견본주택 방문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공급 신청자의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의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 특별공급 항목별 중복청약은 불가하며, 동•호수 배정은 사업주체의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Ⅲ. 일반공급

▣ **신청일시 및 장소**

구 분	신청일자	신청장소 및 방법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일반공급	2017. 06. 09(금) ~ 2017. 06. 10(토) 10:00 ~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방법 : 당사 견본주택 직접 방문을 통한 창구 접수	당첨자발표 및 동호수추첨 : 2017. 06. 11(일) 13:00

▣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일반공급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7. 06. 08)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 청약 신청은 가능하며,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여부, 주택소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

▣ **청약 신청금**

구 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및 구비서류
전 주택형	10만원	• 신청금 납부 방법 – 신청금은 본사 및 견본주택에서 직접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약 신청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 1부, 신분증(사본), 도장, 청약자 명의 신청금 환불계좌 또는 통장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위임장 1부(견본주택 비치), 위임자 및 대리인 각각 신분증 (사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신청에 해당됨.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일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2017. 06. 12(월)]부터 10일 이내 청약자가 제출한 청약금 환불계좌로 자동 환불됨.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방법

환불대상	환불장소	구비서류
자동 환불 신청자	온라인 이체	– 청약 접수 시 제출한 본인명의 청약신청금 환불계좌로 당첨자 발표일 이후 10일(영업일 기준)에 자동 환불됨
자동 환불 미신청자	당사 견본주택	– 본인 신청 시 : 환불요청서 1부, 신분증(사본), 도장, 청약자 명의 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위임장 1부(견본주택 비치), 위임자 및 대리인 각각 신분증 (사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신청에 해당하며, 당사 견본주택으로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여야 함.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 공급	공항근무자 / 재능기부자 신혼부부 / 지역거주자	• 일시 : 2017. 06. 10.(토)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일시 : 2017. 06. 11.(일) • 확인방법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http://wwww.hndapt.co.kr)	• 일시 : 2017. 06. 14(수)~2017. 06. 16(금) (3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일반 공급		• 일시 : 2017. 06. 11.(일)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http://wwww.hndapt.co.kr)		

※ 특별공급 동 · 호수 추첨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 이후 일반 공급분의 동 · 호수 추첨이 별도로 진행 됨. ※ 정당당첨자 계약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공급함. ※ 이중당첨자의 계약은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당첨자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별도로 동 · 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 특별공급 당첨자의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일반공급	•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 선 추첨 이후 이를 제외한 동 · 호수를 무작위로 결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청약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Ⅴ. 계약 체결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일시 : 2017. 06. 14(수)~2017. 06. 16(금) (3일간, 시간 : 10:00~16:00) •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당첨자에 대한 중복당첨 등 전산검색결과 확인 후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 시 구비 사항

구 분	서류유형 - 필수	서류유형 - 추가(해당자)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O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 인감도장(아파트 임대계약용)또는 본인일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O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아파트 임대계약용) 1통	
	O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O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	
		O	• 대리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견본주택비치), 인감증명서(아파트 임대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O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일반공급		O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O	• 가족관계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7. 06. 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 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조건

• 중복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사실을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본 주택은 청약접수일자 및 타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과 관계없이 청약 및 계약이 가능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및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 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 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 소음 ·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제기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 ·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는 당첨효력이 무효화 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 일에 아래 임대보증금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중복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함) • 아래 계좌의 예금주는 향후 "(주)유승종합건설"로 변경될 예정임.(계좌번호는 동일)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 잔금	우리은행	1005-703-233737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 금융1센터

Ⅵ.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입주개시 전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19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행정명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맘스스테이션, 독서카페, 주민카페, 주민회의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Ⅶ. 추가 선택 품목

▣ **유의사항**

■ 청약 · 당첨 · 입주 · 관리 등

• 이 주택의 계약은 사업주체인 (주)유승종합건설과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전화상담, 영종 A-1블록 「영종하늘도시 유승한내들 스카이스테이」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미입주 시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제출 및 조사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영종하늘도시 유승한내들 스카이스테이」의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으며, 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최초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무거주 기간은 최초입주일로부터 8년이며, 임대기간 내 중도 퇴거 시 사업주체에서 책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일부는 유보금으로 지정되어 하자보수 (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정산을 위해 임대보증금 중 일금오백만원(5,000,000원)을 퇴거 시 지급유보하며, 유보금은 공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정산 · 반환하므로 이에 대한 조기 지급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주택임대사업자((주)유승종합건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정일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손해배상도 발생합니다. • 잔금 및 당월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의합니다. •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 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당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는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동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8년)의 경과 후 임대기간 연장 또는 분양전환 여부는 당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항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이 주택 청약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당 군 및 주소는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개발지구 및 단지 외부여건

•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기반시설 (도로, 상 · 하수도, 공원 등) 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실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본 사업부지 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인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오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들이 반경 1km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기 시설로 인하여 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 홍보 유인물 (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 에 표시된 각종 시설 (학교, 도로, 지하철, 공공용지, 공원, 버스정류장, 완충녹지, 보행자도로)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 · 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시 · 발굴조사 및 보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 · 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세대수, 용적율, 면적 등)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예정) 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령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 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 · 주차장 · 학교보건 등 관계법령의 조례, 인허가 변경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내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외관은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설치되는 도로, 공공공지, 어린이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하나의 단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입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 · 층별 · 호수별로 일조권 · 조망권 · 생활권 · 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동의 단지 내외간 레벨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 후면, 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해 공사 완료 후 소음치와 상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차량증가로 인한 입주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카다로그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의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명칭, 동번호,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상세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색채심의 등을 포함)결과 및 법규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몰딩을 설치할 경우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과 동등 수준으로 시공됨),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서 각동으로 진입하는 주동 출입구의 위치는 필로티 유무, 주동형태 및 대지의 단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하훼룸, 자전거 보관소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악취, 해충,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구조 형식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접근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세대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자전거 보관소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일부구간의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 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 부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 (이동식 또는 고정식) 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경로당, 보육시설, 관리사무소가 일부 동 아파트 저층 및 인근에 위치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 홍보사인물, 영구 배수시스템 유지, 휴대전화/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 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TV 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 (옥상) 에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임차인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고,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도면 및 모형 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관 전면에 계단실은 동 ·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통로, 주변 도로 및 광장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각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에 의해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외관 및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야간에 빛에 의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문고,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단위세대 및 마감재 등

• 단위세대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 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난간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 (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등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으며,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크기 등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 (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 (습도 증가) 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 (규격) 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 발코니/화장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화장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예: 타일 등) 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세대내 통합 분전반이 신발장 내에 설치되는 경우 선반 (신발장 가구) 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전반 개폐를 위해 추가적인 선반배치는 지양해야 합니다. • 각종 창호류 (방화문 포함) 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전대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등)은 별도마감이 없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파우더룸 하부, 신발장 내부 또는 배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 내부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창호 일부에 설치되는 자연형 환기 방식으로 시공됩니다.(별도의 기계식 환기 설비 미시공) • 대피공간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시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시설입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모집공고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으로 확인바랍니다. • 대피공간은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 및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 시 창호 및 유리의 규격 및 성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 · 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창호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 구획이 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부에 설치된 에어컨은 견본주택 냉방을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에어컨 냉매 선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 2개소만 설치되며 침실2, 침실3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주민공동시설,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용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80A, 84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인 동 · 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내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견본주택 환기를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을 적용합니다.

■ 기타사항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시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거서비스(예정)의 경우, 입주시점에 다소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 내 유치업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여건에 따라 입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거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물품 및 시설의 이용시 망실 또는 분실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퇴거 시 가구 등 기본 설치 품목의 상태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기설치 품목[가구, 창호, 바닥재, 도배지(벽면 및 천정), 걸레받이 등]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범위, 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주체와의 협의에 따릅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상가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공급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승인변경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계약이후 임차인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인 (주)유승종합건설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의 타사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을 본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 점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 및 청약시 주택형(㎡)	80.1472㎡	80.3131㎡	84.8366㎡
약식표기	80A	80B	84

Ⅷ. 부대복리시설 및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 등 기타 사항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맘스스테이션, 골프연습장, 헬스장, 주민카페, 주민회의실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1[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적 용 여 부
고기밀 창호	적 용
고효율 기자재	적 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 스위치	적 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 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 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유)광진이엔지	㈜금라기술단	㈜금라기술단
감리금액	₩978,954,900	₩402,626,506	₩44,000,000	₩11,00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대보증금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22017-704-0020000호	4,416,000,000원	임차인모집공고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
1. 보증사고(사용검사전)"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2. "보증사고(사용검사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보증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나. 보증기간내에 주채무자가 파산 · 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3. "보증사고일"이라 함은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보증약관 제1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목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가. 임대보증금약관 제1조 제5호 가목 및 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나. 임대보증금약관 제1조 제5호 나목에서 라목 및 제6호 가목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보증채무의 성립** :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발급일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사용검사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해당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는 때(법인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 보증서에 기재된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임대보증금 환급.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일부 보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 자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환급
2. 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환급 또는 분양전환.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 비용 · 기타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 · 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사용검사전으로서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대여 받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행사의 해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 당사가 본 아파트의 시행권 및 임대인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임대인이 지정한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한다.
※ 임대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당사가 본 아파트의 시행권 및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회사
상 호	㈜유승종합건설	㈜유승종합건설
주 소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51, 7층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51, 7층
법인등록번호	120111-0497778	120111-0497778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ndapt.co.kr

▣ **임차인모집공고** :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3

※ 본 공고는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내 들
유승한내들 스카이스테이
시행 · 시공 (주)유승종합건설

영종하늘도시 A1블록
80m²A/B, 84m² 총 420세대
문의 1670-7677